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공증업무 질의 · 회신
(2015. 6. 1. ~ 2016. 5. 31.)

①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 관련

■ 질의내용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교부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을 경우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을 받았을 때 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채무자가 ○○지방법원 20□□#타경 ◇◇◇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금액 16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보증금 회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확인하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4,600만 원이어서 결국 채권자는 위 4,600만 원과 공탁금 이자만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압류 ·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공정증서상의 금액

전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용된 집행문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재민 62-9).

압류 전부명령 결정문과 항고사건의 공탁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되어 집행문 재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피전부채권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회신내용

○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집행채권이 일응 전부명령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집행채권자는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 즉, 피전부채권이 애초에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되지 않고(동조 단서) 전부명

령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권원은 집행채권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재민 62-9),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 이와 같이 집행채권자가 새로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 정본을 발급받고 그 정본에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정본은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문도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지만 집행채권자에게 이미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임의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정본 발급이나 재도 부여에 있어서 법원사무관 등은 순전히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뿐이지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재도 부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전단). 또한, 채무자를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후

단). 이와 같이 재도 부여 여부에 대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면서 재도 부여를 해 준 사실과 이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재판장의 관여로 과잉집행을 통제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집행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과정에서 집행문 재도 부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제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로 돌아와 살펴다면 정본 발급의 면에서는 판결의 경우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준 상태에서 재도 부여를 하는 면에서는 집행증서와 판결이 확연히 달립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 없이 공증인 단독으로 내어 줍니다(제57조, 제59조 제1항). 원래 1990년 이전에는 집행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재도 부여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재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재도 부여를 할 수 없었으나 1990년 구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522조를 개정하여 공증인의 경우는 재판장의 관여 없이 공증인 단독으로 재도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증인은 법원사무관 등과 달리 재판장의 관여가 없어도 본직 스스로 과잉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문 부여 사무를 충분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로써 재도 부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공증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지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공증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 다만, 공증인도 재도 부여를 하기 전에 재판장의 경우처럼 채무자에 대하여 심문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제59조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재도 부여에 대하여 공증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재판장에 준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공증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공증인 단독으로 재도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공

증인도 재판장의 경우처럼 채무자를 상대로 심문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도 부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참조). 실무상 공증인이 재도 부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인은 재도 부여 전에 촉탁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채무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집행문에 대한 재도 부여 시 공증인의 지위나 역할을 이와 같이 볼 때 집행채권자가 공증인이 내어 준 집행력을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다음 그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증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전부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재도 부여 시보다 한층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일응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채권이 피전부채권이 부존재로 소멸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재도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채권자가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있으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꼭 패

소판결이 없어도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면 정본을 재교부하고 그 정본에 집행문을 재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제3채무자 단독 명의의 확인증서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제3채무자가 특별히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니라면 그 확인증서만으로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는 공증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질의 사안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피전부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회수청구권)이고 피전부채권의 금액은 법원에 제출된 공탁서 등본과 전부명령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에서 제시한 증서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집행채권자가 증서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피전부채권의 일부 부존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피전부채권 중 일부 금액은 유효하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채권 중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재도 부여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도 부여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의사록 인증 관련

■ 질의내용

첨부한 인증서 법무법인 ○○의 5명의 구성원들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 출석하여 의사록의 공증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인증받은 것인지 또는 각 구성원들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인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가. 첨부한 인증서에 따르면 2006. 10. 8. 법무법인 ○○의 구성원인 A, B, C, D, E 등 5명이 모두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 출석하여 구성원회의 의사록을 제시하고 인증을 촉탁한 것인지 아니면 위 구성원들의 일부라도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첨부와 같은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위와 같은 구성원회의 의사록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한 구성원 중에서 출석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구성원의 대리인이 개인 인감증명서가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 나항과 같이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인증서의 인증문에는 해당 구성

원이 누구이고, 해당 구성원의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첨부된 인증서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촉탁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편집자 주 : 질의의 인증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생략함.

■ 회신내용

1. 가. 항에 대한 답변

-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면 의사록 인증을 할 때 공증인은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그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범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 따라서 만일 촉탁인 본인의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 의한 촉탁으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사실조회서에 첨부된 의사록 인증서에 따르면 구성원 5인이 모두 직접 공증인 앞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나. 항에 대한 답변

-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30조, 제27조)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31조 제2항).

-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촉탁 시 대리권 증명은 꼭 인감증명서가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3. 다.항에 대한 답변

- 촉탁인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는 본인이 출석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 인증서에 그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경우 한편으로는 촉탁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촉탁인의 대리인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령, 촉탁인 을의 대리인 겸 촉탁인 갑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실도 인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라.항에 대한 답변

- 첨부된 인증서에 따르면 촉탁인들이 모두 직접 출석하여 촉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출석하여 촉탁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인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협회 주요 활동

(2015. 1. 1. ~ 2015. 12. 31.)

①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관한 협회 의견 제시

- 협회는 법무부가 2015년도 상반기에 마련한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대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201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 법무부 지침(안) 중 의사록을 인증한 경우 그에 관한 법인등기사무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제9조(업무 제한 등) 제2항에 대하여,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변호사법 제51조(업무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3호가 규정한 의사록 인증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면 법인등기사무도 가능한 것이 현행 법체계이고, 나아가 변호사와 공증인의 직무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서, 인가공증인사무소가 법인등기 병행수행으로 다수 사건을 유치하거나 공증수수료의 할인 등의 부작용을 현실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 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인식되어 수행 중인 업무를 사후적으로 지침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되어, 동 규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바, 만일 인가 공증인의 등기업무 병행수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감사와 징계 강화 등 다른 제재수단을 통하여 규제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 동 지침이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명령 또는 제2호 소정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이 공증인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형태보다는 법무부가 제시하는 직무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안)과 같은 통일적 기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2015. 4. 3.(금) 법무부에 공식 건의함.
 - 다음은 협회가 2015. 4. 3.(금) 법무부에 제시했던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1.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 제6조 및 제7조 관련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 이하 '지침'이라 함.)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방법)와 제7조(인증부의 기재 방법)의 경우, 촉탁인의 정의에 대하여 과거의 실무 예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새로운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9조 제2항 관련

지침 제9조(업무 제한 등) 제2항에서 의사록을 인증한 경우 그에 관한 법인등기사무취급을 제한하는 것이 공증인법, 변호사법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법체계상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중 일부에게 공증업무를 인가하고, 이를 공증인법상 인가공증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범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51조(업무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3호에서 의사록 인증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면 법인등기사무 등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사와 공증인의 직무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며, 인가공증인사무소가 이와 같은 법인등기 병행수행으로 다수 사건 유치, 공증수수료의 할인 등의 부작용을 현실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인식되어 수행 중인 업무를 사후적으로 지침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고, 동 규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인가공증인의 등기업무 병행 수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감사와 징계 강화 등 다른 제재수단을 통하여 규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제12조 관련

지침 제12조(직무집행 구역)의 직무집행구역 제한과 관련하여, 공증인법상 직무집행구역은 종래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의 산물로 보이며, 공증의 촉탁이 상당 부분 공증인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직무집행구역의 제한을 삭제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의 경우 사실상 지역별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직무집행 구역의 제한은 공증인뿐만 아니라 촉탁 인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집단공증 유치와 같은 부작용은 다른 제재수단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공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4. 제13조 및 제16조 관련

지침 제13조(참석인증에서의 부속서류) 및 제16조(청문인증의 부속서류)의 부속서류 편철순서가 기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 함)」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와 달리 규정되어 혼선이 초래되므로, 이는 서식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지침 제15조(청문인증을 위한 진술의 청취 등)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 서식>의 확인서”는 번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서식규칙 별지 제38호서식(진술서)에 “소집통지발송일”란과 “회의 안건”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6. 지침의 성격 관련

이 건 지침이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명령 또는 제2호 소정의 직무상명령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행정법상의 관점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바, 우리 협회의 의견으로는 이 건 지침은 공증인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형태보다는 귀부에서 제시하는 직무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통일적 기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7. 이상과 같이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견의하오니, 부디 동 지침(안) 시행 전에 충실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서 원문 끝>

2 협회 조사위원회 출범 및 활동

- 협회는 공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5. 7. 21.(화) 특별위원회로서 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4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인법 또는 회칙 위반 행위,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공증사건 유치 행위, 공증인 아닌 자에 의한 공증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개인이나 집단이 공증인의 직무를 침범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협회

차원의 구체적 사실 조사에 나서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행위가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또는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엄중한 징계 요구를 비롯한 행정처벌 요청 및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3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간담회 개최

- 2015년도 상반기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법무실장 등 공증 담당 업무 실무진과 협회 임원 간 상견례를겸한 공증 제도 전반에 관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5. 5. 22. (금)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증인 징계 완화 및 공증인 교육 강화 요청, 모객형 공증브로커 및 번역공증 브로커 대책 강구 논의, 법무부 차원의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 지원 요청, 부동산 인도집행증서 범위 완화 보완 요청 등의 현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는 한편 기타 공증실무 상 의사사항 등 제반 자료를 전달하였음.

4 공증인법상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등 관련 규정 개정 필요사항 건의

- 협회는 현행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 있는 공증인 정원제하에서 협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 즉 구체적으로
- 첫째, 임원의 수를 정하고 있는 제77조의2 목적과 설립 규정 및 제77조의4 임원 규정에 관하여 현행 공증인 정원제 규정상 정회원 기준 최대 276개소(명)의 회원에 불과한 협회 임원 수를 협회장부터 감사까지 합산하여 정회원 기준 최대 69개소(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 의결기구인 총회의 성격과 회원 및 임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므로 임원 규정 중 구성 및 임원 수 부분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둘째, 총회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7조의5의 경우도, 총회가 전체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회원 총회로 구성되도록 하며,
 - 셋째, 협회가 임의단체였을 때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결기구 역할을 했던 운영위원회를 공증인법에서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옥상옥 기구이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77조의6을 삭제하는 등 협회 조직과 관련된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2015. 12. 31.(목) 자료 공식 전달함.
 - 다음은 협회가 2015. 12. 31.(목) 법무부에 제시했던 「공증인법상 대
- 한공증인협회 조직 등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사항 건의」 의견서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 ◎ 협회 의견서 원문
- #### 1. 법 제77조의2 및 77조의4 관련
- 현행 공증인 정원제 규정상 정회원 기준 최대 276개소(명)의 회원에 불과한 협회 임원 수를 협회장부터 감사까지 합산하여 정회원 기준 최대 69개소(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 의결기구인 총회의 성격과 회원 및 임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바,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 규정과 같이 임원 규정 중 구성 및 임원 수 부분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
- #### 2. 법 제77조의5 관련
- 총회의 구성을 대의원총회로 정하고 있으나, 협회가 전국 공증인의 단일 조직체로 구성된 성격상, 그리고 변호사법상 지방변호사회가 연합되어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어렵고, 현행 공증인 정원제상 276개소(명)의 회원에 불과한(2015. 12. 30. 기준 공증인법 경과규정에 따라 현원은 총 345개

소) 협회의 총회를 굳이 대의원총회로 규정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는바, 전체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총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법 제77조의6 관련

협회가 임의단체였을 때 이사회를 대신 하여 의결기구 역할을 하던 운영위원회를 공증인법에서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옥상옥 기구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의결기구의 중복을 배제함.

4. 법 제77조의8 제3항 관련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 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는 독립성이 없는 산하기관에 타당한 규정으로서 삭제되는 것이 합당하며, 특히 특정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변호사법상 변호사연수의 경우도 보고 규정은 없음).

개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7조의2 (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중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p> <p>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p> <p>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p> <p>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p> | <p>제77조의2 (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중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p> <p>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p> <p>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p> <p>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p> |

성 · 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7조의4 (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7조의5 (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회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6 (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7조의8 (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

성 · 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7조의4 (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77조의5 (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6 <삭제>

제77조의8 (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

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 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 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 협회가 정한다.

③ <삭제>

5 회원 공증업무 관련 질의 검토 · 회신

- 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질의 검토 · 회신
- 소멸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 검토 · 회신
-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문 재도 부여 관련 질의 검토 · 회신
-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 사건 관련 사실조회 검토 · 회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 사건 관련 사실조회 검토 · 회신

6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활동

① 베트남 하 흥 끄엉 법무부장관 일행 협회 내방

베트남 하 흥 끄엉 (Ha Hung Cuong) 법무부장관 등 일행 14명이 2015. 3. 31.(화) 협회를 방문, 유원규 협회장 등 협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공중제도 현황과 공증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회담을 진행함.

② 2015년도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일본 정기회의 참석

일본공증인연합회 주최로 2015. 9. 10.(목) ~ 11.(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15년도 UINL(국제공증인협회) CAAs(아시아지역위원회)에 참석, 각국의 공증현황에 대

한 논의와 함께 공중의 예방 사법적 역할 및 혼인, 별거, 이혼 및 양육권 분야에서 공증인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③ 국제공증인협회(UINL) 다니엘 세다르 생고르 회장 협회 내방

국제공증인협회(UINL) 다니엘 세다르 생고르(Daniel-Sédar Senghor) 회장이 2015. 9. 13.(일)~16.(수) 까지 한국을 방문,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예방하고, 한국의 공중제도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환담 등을 나누었으며, 특히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증 실무를 직접 견학함.

7 2015년도 『공증과신뢰(구, 대한공증협회 지』(통권 제8호) 발간

- 협회 기관지 『공증과신뢰』 2015년도 통권 제8호 시론으로 “공증의 신뢰 회복”을, 특집에 △ 의사록의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남상우 법제이사), △ 공증 규제 개선에 관한 건의(이상석 부협회장)를, 논단으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 보증조항의 해석문제(한정화 공증인), △ 생활 속 신탁(배정식 하나은행 본점 상속신탁팀장)을, 판례

평석에 △ 2014년도 공증 관련 판례(박상진 공증인) 등의 논문과 함께 수필로 △ 재미있는 공증 이야기(김지운 법무법인 이현 공증팀장)를, 국제회의 보고서로 △ 제4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참가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공증사무지침, 법령자료 및 유권해석, 협회 새 회규 및 주요 회무 등을 게재, 2015. 6. 1.(월) 총 1,100부를 발간, 회원 및 법원·검찰·변호사회·국공립도서관·유관기관 등에 배포함.

8 협회 홍보 브로슈어 국·영문판 제작

- 협회는 한국의 공중제도 및 협회에 관한 홍보 차원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브로슈어를 2015. 7. 각 100부씩 제작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 및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 위원회 회원국 등에 배포함.

9 협회 홍보 브로шу어 국·영문판 제작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주최로 현행 공증인법 제정일(1960. 9. 23.)이 포함된 2015. 9. 21.(월)~26.(금) 까지를 제9회 공증주간으로 설정하였음. 다만, 이번 공증주간은 제3회 공증주간 때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선포식이나 홍보대사 위촉 등 일체의 대내외 행사를 포함하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등은 시행하지 않음.

2015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015. 1. 1. ~ 12. 31.)

- 2015. 1. 9.: 질의(1인 주주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회신 / 법무법인 ○○
- 2015. 1. 20.: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 · 회신 ② 2015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③ 2014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및 2015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④ 201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⑤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 2015. 1. 22.: 질의(소멸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등) 회신 / 법무법인 ○○
- 2015. 1. 22.: UINL 2014년도 정기총회 의결 권고사항 전달에 따른 전자등기(공증) 업무 개선 참조 요청 /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 2015. 1. 29.: 2014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15. 2. 5.: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추천(남상우 법제이사) / 외교부

- 2015. 2. 11. : 법인의사록 및 정관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관한 협회 의견 개진 예정에 따른 시행일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5. 3. 9. :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5년도 사업 계획안 승인 (원안 의결) ② 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 의결 (원안 의결) ③ 장부 조제 및 인증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원안 의결) ④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원안 수정 의결) ⑥ 201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안 승인 (원안 의결) ⑦ 법무부 법인의사록 및 정관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관한 논의
- 2015. 3. 9.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실적회비 인상을 골자로 한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총회 상정 예정의안에 관한 권고 (자문)
- 2015. 3. 30. : 201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실적회비 인상을 골자로 한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이사회 의결 사항 추인 (원안 의결) ②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③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원안 의결) ④ 기타 논의 - 법무부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 등에 관한 협회 의견 검토
- 2015. 3. 31. : 베트남 하 응 꼬엉 법무부장관 일행 협회 내방
- 2015. 4. 3. :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안)에 관한 협회 의견 제시 / 법무부
- 2015. 4. 8. : 2015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및 안내, 조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시행 안내,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실적회비 인상 안내 / 법무부 및 회원
- 2015. 4. 14.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안원모 부협회장 겸 총무이사, 남상우 법제이사) 추천 / 법무부
- 2015. 4. 20.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② 협회 영문 홍보자료 개정판 발간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④ 법무부 법무 실장과의 오찬간담회 논의
- 2015. 4. 21. : 사실조회 회신 / 서울행정법원
- 2015. 5. 19. : 법인의사록 및 정관 인증사무

처리지침 안내 / 회원

- 2015. 5. 19. : 법조인윤리선언(안)에 대한 의견 요청 회신 / 법조윤리협의회
- 2015. 5. 22.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②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 2015. 5. 27. : 진정서 접수 회신 / 일반인 □□□
- 2015. 6. 1. : 2015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8호 제공 및 기증 등 납본 / 회원 및 법원, 검찰, 국·공립중앙도서관, 유관기관 등
- 2015. 6. 11. : 질의(전부명령의 경우 집행문 재도 부여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15. 6. 22.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재논의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서 회신안 검토 ③ 일본공증인연합회 주최 UINL 2015년도 CAAs 참석 관련 제반 논의 ④ 협회 영문 브로슈어 개정판 발간자료 및 제작부수 등 검토 ⑤ 2015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8호 원고료 책정·지급 논의 ⑥ 협회 직인 개인 검토

- 2015. 6. 26. : 2015년도 연회비 및 과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5. 6. 26. : 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위원) 위촉 등 / 조사위원회 위원
- 2015. 7. 21.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일본공증인연합회 주최 UINL 2015년도 CAAs 발표자료(국문) 검토 ② 2016년도 UINL 의결기구 일부 회의의 아시아 지역 개최 제안 검토 ③ 협회 브로슈어 디자인 및 국·영문 최종 검토
- 2015. 7. 21. : 제1차 조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② 조사위원회 위원회 운영 방식 논의 ③ 협회장의 조사개시 명령에 따른 제2015-1호 사건 조사담당 위원 지명 등
- 2015. 8. 10. : 단체의 선거현황 등 파악 협조 요청 회신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2015. 8. 31.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UINL 회장 방한 관련 제반 사항 논의 ② 협회 브로슈어 영문 번역 최종 검토 ③ 2015 일본 CAAs 회의 발표자료 국·영문 및 참석 증정용 선물 검토 ④ 제9회 공중주간 설정

- 2015. 9. 10. ~ 12. : 일본공증인연합회 주최 UINL 2015 CAAs 정기회의 참석 / 협회장, 총무이사(부협회장 겸임), 국제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 2015. 9. 13. ~ 16. : 국제공증인협회 (UINL) 다니엘 세다르 생고르 회장 협회 내방
- 2015. 9. 15. : 제9회 공증주간 설정 협조 요청 및 안내 / 법무부 및 주요 언론사, 회원
- 2015. 9. 21. ~ 25. : 제9회 공증주간 설정
- 2015. 10. 5.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제2015-1호 사건 조사 중간 경과보고 ② 서울성동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논의 ③ UINL 회장의 2016. 2. UINL 상임위원회 한국 개최 제안 관련 논의 ④ 법무부의 인가공증인 내 공증 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논의 ⑤ 2016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9호 특집 주제 검토
- 2015. 10. 6. : 제2차 조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제2015-1호 사건 조사 경과 보고 등 제반 논의
- 2015. 10. 12. : 법무부의 인가공증인 내 공증 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의견 수렴 / 회원
- 2015. 10. 14. : 제3차 및 제4차 조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제3차) 조사 제2015-1호 사건 진정인 제보 청문 및 제반 논의, (제4차) 조사 제2015-1호 조사서 접수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5. 10. 28. :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의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회원 의견 수렴 검토 ② 조사위원회 제2015-1호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등 보고
- 2015. 10. 28.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권리고 (자문) ② 조사위원회 제2015-1호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및 협회 처분 의결 (원안 의결) ③ 운영위원 및 총회 의장 사임 의결 (원안 의결)
- 2015. 10. 30. : 2016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15. 11. 3. : 공증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와 징계 건의 및 관련자 법적 처벌 요청 / 법무부
- 2015. 11. 6. :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

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회원 의견수렴 결과
송부 / 법무부

○ 2015. 12. 31. : 공증인법상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등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사항 건의 / 법
무부

○ 2015. 11. 23.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의 인가
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
설 추진 관련 회원 의견 수렴 내용 검
토 ②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③ 임
명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 신분증
규칙 제정 논의 ④ 공증인법 제87조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공문 시행 여
부 검토

○ 2015. 12. 21. :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법상 협
회 조직 관련 개정 필요 사항 검토 ②
법무부의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
호사 제도 신설 공증인법 개정안 내
용 검토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요청받은 공증인보조자 현황 및 자료
제공 여부 검토 ④ 조사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조사위원 확충 검토 ⑤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 문구를 사
용하여 공증인법 제87조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협회 명의 서한 발송 여
부 재검토 ⑥ 임명 공증인회가 건의한
검찰 · 법원 · 변호사단체가 참여하
는 법조비리척결TF에 협회 참여 요청
등 건의 사항 검토 ⑦ 어음배서 양수
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건
의 사항 검토

2015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015. 1. 1.~12. 31.)

○ 입회 현황 ○

(공증인 임명 및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등)

◆ 공증인 조무희 사무소

- 소속 서울북부지검

- 임명일 : 2015. 2. 26.(임기 : 2017. 12. 31.까지 / 정년)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168길 17, 2층 (도봉동, 청화빌딩)
(우) 01321
- 전 화 : 02-956-5007, 5008
- 팩 스 : 02-972-4455
- 입회일 : 2015. 3. 4.

◆ 공증인 배원건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5. 2. 21.(임기 5년)
- 사무소 :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4, 4층 (서소문동)
(우) 04514
- 전 화 : 02-3789-6313
- 팩 스 : 02-3789-6310
- 입회일 : 2015. 3. 17.

◆ 공증인 정신동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5. 2. 21.(임기 5년)
- 사무소 :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5호 (서초동, 영포빌딩)
(우) 06595
- 전 화 : 02-776-5709, 776-6739
- 팩 스 : 02-773-0121
- 입회일 : 2015. 3. 19.

◆ 공증인 권세현 사무소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5. 3. 23.(임기 5년)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 3층 (부평동, 대신스카이프라자)
(우) 21394
- 전 화 : 032-501-8484
- 팩 스 : 032-519-4622
- 입회일 : 2015. 3. 24.

◆ 공증인 이용철 사무소

- 소속 서울동부지검

- 임명일 : 2015. 3. 13.(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0, 303호(잠실동, 은성빌딩)
(우) 05558
- 전 화 : 02-2042-1100
- 팩 스 : 02-2042-8800
- 입회일 : 2015. 4. 20.

◆ 공증인 송준길 사무소

- 소속 서울남부지검

- 임명일 : 2015. 4. 17.(임기 5년)

- 사무소 : 서울중앙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401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우) 07327
- 전 화 : 02-3478-8200
- 팩 스 : 02-3478-5544
- 입회일 : 2015. 4. 22.

❖ 공증인 김영찬 사무소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15. 5. 6.(임기 5년)
- 소재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A동 302호(감전동, 보생빌딩)
(우) 46984
- 전 화 : 051-328-0157
- 팩 스 : 051-328-0155
- 입회일 : 2015. 6. 3.

❖ 공증인 최직렬 사무소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5. 6. 29.(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봉화로 13, 1층
(사우동, 부흥빌딩)
(우) 10109
- 전 화 : 031-996-0033
- 팩 스 : 031-985-0056
- 입회일 : 2015. 6. 30.

❖ 공증인 한기봉 사무소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5. 5. 13.(임기 5년)

- 소재지 :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707호
(주안동, 르네상스타워)
(우) 22134
- 전 화 : 032-258-1001~3
- 팩 스 : 032-258-1007
- 입회일 : 2015. 8. 11.

❖ 공증인 강동우 사무소

- 소속 대구지검

- 임명일 : 2015. 7. 31.(임기 5년)
- 소재지 : 대구 중구 달성로 37, 812호
(대신동, 계성빌딩)
(우) 41927
- 전 화 : 053-424-8001
- 팩 스 : 053-424-8007
- 입회일 : 2015. 9. 9.

❖ 공증인 김권영 사무소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5. 7. 21.(임기 5년)
- 소재지 :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208호(주안동, 르네상스타워)
(우) 22134
- 전 화 : 032-420-0700~1
- 팩 스 : 032-420-1700
- 입회일 : 2015. 10. 8.

○ 회원 탈퇴 ○

(공증인 면직 및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등)

❖ 세방종합 법무법인

- 소 속 : 의정부지검
- 대 표 : 조무희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4층 (의정부동, 한화생명빌딩)
- 탈회일 : 2015. 1. 6.

❖ 공증인 김창엽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5호 (서초동, 영포빌딩)
- 탈회일 : 2015. 2. 4.

❖ 공증인 황상구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4, 4층
(서소문동)
- 탈회일 : 2015. 2. 20.

❖ 법무법인 남명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이한동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6층 (서초동, 태양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수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김광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9,
6층 (반포동, 베르디타워)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유한) 태승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임호범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301호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대양

- 소 속 : 서울동부지검
- 대 표 : 김철우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913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우암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대 표 : 송종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6,
2층 (구로동, 도진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지인

- 소 속 : 서울북부지검
- 대 표 : 함성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8길 17,
2층 (도봉동, 청화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오아시스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조영상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701호 (상동, 법조타운)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위민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김남근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 3층
(부평동, 대신스카이프라자)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새길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이현용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19, 503호
(서현동, 금화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장인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고재정 · 안의석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5, 2층
(원천동, 장인빌딩)
- 탈회일 : 2015. 2. 6.

❖ 제일종합 법무법인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고영준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3번길 6, 101호
(단대동, 신생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동래

- 소 속 : 부산지검
- 대 표 : 김충희 · 최현우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104호 5층 (거제동, 세헌빌딩)
- 탈회일 : 2015. 2. 6.

❖ 공증인가 매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부산지검
- 대 표 : 이인수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
203호 (거제동, 보은빌딩)
- 탈회일 : 2015. 2. 6.

❖ 법무법인 동행

- 소 속 : 울산지검
- 대 표 : 정선명 변호사
- 소재지 : 울산 남구 법대로 81번길 4,
3층 ~ 4층
(옥동, 거화법률빌딩)
- 탈회일 : 2015. 2. 6.

❖ 공증인 양재환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401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 탈회일 : 2015. 6. 3.

❖ 법무법인 엘에스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염규상 · 최직렬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봉화로 13, 1층 ·
 4층 (사우동, 부홍빌딩)
· 탈회일 : 2015. 6. 29.

❖ 공증인 이금원

· 소 속 : 광주지검
· 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4, 2층 (궁동)
· 탈회일 : 2015. 6. 30.

❖ 공증인 장희목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4-1,
 1003호 (태평로 2가, 태평빌딩)
· 탈회일 : 2015. 7. 3.

❖ 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서부지검
· 대 표 : 임규오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707호 (공덕동, 제일빌딩)
· 탈회일 : 2015. 12. 24